

2012. 12. 19.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

## 알기쉬운 재외선거운동 안내

- ❶ 이 자료는 2012. 12. 19.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주재국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- ❷ 이 자료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한·금지될 수 있으며,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·시기·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.
- ❸ 또한 대한민국 관련법에 따라 허용된 사례라도 주재국의 법에 따라 제한·금지된 행위는 그 주재국의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❹ 이 자료에 의하여도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(82-2-502-8475, 82-2-502-6516) 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(<http://ok.nec.go.kr>)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



## 선거운동 개요

### 1. 선거운동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 (공선법 §58, §59)

#### 선거운동 정의

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

#### 선거운동기간

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(2012. 11. 27.~12. 18) 중에만 할 수 있음

### 2.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(공선법 §58)

-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-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·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-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를 지지·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

※ 호별로 방문하거나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

### 3.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(공선법 §60, §218의14⑥)

-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(외국인, 만 19세 미만인 자)
- 대한민국 국가(지방)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
-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·직원 및 이 단체의 대표자
- 한국국제협력단·한국국제교류재단·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·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

※ 그 밖에 공선법 §60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

※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중에도 선거 운동이 금지됨



## 재외선거운동 방법

### 1. 재외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(공선법 §59, §82의4, §218의14)

#### 주체
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함

#### 방법

-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(문자 외의 음성·화상·동영상은 제외)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.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은 불가
-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및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
※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행위는 할 수 없음
-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·수화자 간 직접 통화행위 및 말(언어)로 하는 행위  
※ 다만, 현지시간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
-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라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할 수 없음
- 국외선거운동방법 제한 이유 ⇨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, 돈 안드는 선거 실현, 선거과열에 따른 재외동포사회의 분열 방지

### 2. 정당·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(공선법 §70, §71, §82의7, §218의14)

- 선거운동기간 중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
-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 
※ 재외선거권자는 위 '방송광고·방송연설 및 인터넷광고'는 할 수 없음



## 단체의 선거운동

### 1.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(공선법 §218의14⑦)

단체(그 대표자와 임·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)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음

### 2. 공명선거 추진활동 (공선법 §10)

-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음
- 단체가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함에 있어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, 특정 정당(창당준비위원회 포함)이나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, 이하 같음)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함

#### 공명선거 추진활동이 금지되는 단체 (예시)

- ◉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·운영하는 단체
- ◉ 특정 정당(창당준비위원회 포함)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
- ◉ 선거운동을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 등



#### 할 수 있는 사례

- ◉ 단체나 개인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·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



#### 할 수 없는 사례

- ◉ 단체나 재외국민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한 인쇄물·현수막·피켓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
- ◉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제공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홍보물 등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게 하는 행위



## 재외국민 · 외국인이 선거법 위반시 받는 불이익

### 1. 중대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(공선법 § 218의30)

#### 제한대상자

-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
-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사람

#### 요청 · 제한방법

외교통상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제한대상자의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함

#### 제한 기간

제한받은 날부터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

### 2.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(공선법 § 218의31)

#### 입국금지 대상자

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. 다만,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제외

\*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통보

#### 입국금지 기간

입국금지 결정일부터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



#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예시

## 1. 선거 관련 기부행위

### 기부행위 개념

기부행위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

**기부행위 제한기간 : 언제든지**



### 할 수 있는 사례

- ④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·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
- ④ 재외선거인등 등록신청·신고 또는 재외투표를 위해 버스 등을 임차·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전원이 그 소요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행위



### 할 수 없는 사례

- ④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, 이하 같음)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
- ④ 투표를 하게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하여 금전·물품·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
- ④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국민에게 고국방문 또는 여행경비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
- ④ 누구든지 각종행사에서 후보자 명의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
- ④ 정당·후보자·제3자가 단체 등에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선거에 관하여 금전·물품,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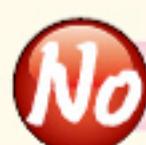
☆ 선거와 관련하여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처벌되는 기부행위 ☆

## 2. 인쇄물 · 시설물 및 언론이용



### 할 수 있는 사례

- ④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·추천하는 내용이 없는 연하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
- ④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일정을 게재한 안내장 등을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



### 할 수 없는 사례

- ④ 재외국민이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의 직책·성명 등을 게재하여 재외국민과 인사시 배부하거나 교회·식당 등에 비치·배부하는 행위
- ④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·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·잡지 등을 종전의 방법 또는 범위를 벗어나 배부·살포·게시·첩부하는 행위
- ④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
- ④ 각종 안내장 등에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 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
- ④ 한인신문·한인회보 등에 후보자의 성명, 사진 또는 업적 등을 광고하는 행위
- ④ 방송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
- \*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를 외국인 등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함께 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됨



### 3. 정당활동 및 정치자금 모금 · 기부



#### 할 수 있는 사례

- ④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는 행위
- ④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



#### 할 수 없는 사례

- ④ 정당이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정당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
- ④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· 반대를 호소하는 행위
- ④ 재외국민이 한인신문 등에 정당의 정강 · 정책을 광고하는 행위
- ④ 정당이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당비를 받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  
※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,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, 선거운동도 할 수 없음
- ④ 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 · 운영하는 행위
- ④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
- ④ 정치자금법에 의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가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인이 연간 법정기부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하는 행위

### 4. 모임 · 행사 및 팬클럽 활동



#### 할 수 있는 사례

- ④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입후보예정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·동정 등 (지지·반대·선전내용은 불가)을 게시하는 행위
- ④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친목도모·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에게 강연을 하는 행위



#### 할 수 없는 사례

- ④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·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④ 각종 모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를 호소하는 행위
- ④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 등에게 인사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를 부탁하는 행위
- ④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
- ④ 후보자를 지지·추천·반대하기 위하여 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·단합대회 또는 야유회,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



# 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



- ➊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처벌 됩니다.
- ➋ 불법선거운동을 묵인·방치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모면하더라도 여권반납, 입국금지 등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.
- ➌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.

민주주의 꽃

선거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<http://nec.go.kr>